

李退溪의 政治思想**

高 橋 進*

● 目 次 ●

I. 緒 論	IV. 朱子 ‘不與共戴天’論과의 異同
II. 壯年期의 經歷과 政治活動	V. 李朝國家의 現상과 對外修好에 관한 퇴계의 방침
III. 對異民族 政策에 있어서 退溪의 기본사상	VI. 結 論

I. 緒 論

중래의 퇴계학 연구로서 비교적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이퇴계의 정치활동 및 정치사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퇴계는 병약하였고, 그를 둘러싼 주위의 환경이 猖獗을 極한 土禍 중에 있었다는 것도 원인이 되어 그 자신이 爲政의 場에 몸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퇴계의 연보를 보면, 생애를 통하여 얼마나 사면을 구하는 상소가 많았는지는 瞭然하다. 그러나 청년기로부터 장년기에 걸쳐서 퇴계는 확실히 臺閣에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정치에 종사하였던 시기가 있었고, 또한 항상 그때의 왕에 신임을 받아서 정치상의 일과 관계를 맺었다. 유학에 있어서 內聖外王 내지는 修己治人의 道가 퇴계에 있어서 모순되지 않고 통일되어 있었으며, 퇴계에 대한 이 방면의 연구는 그의 전체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저자는 이미

* 目白大 학장

** 道原 柳承國박사 기념 논문집, 『東方思想論攷』(1983) 게재논문

1981년 서울의 퇴계연구원에서 주최한 바 있는 ‘퇴계학과 그 계승발전’이라는 題下의 국제학술회의에 있어서 ‘이퇴계의 정치사상에 대하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한 보고가 있다. 그것은 퇴계의 鄉立約條의 역사적 성격과 그 내용 및 「戊辰六條疏」의 사상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 논문은 먼저 「甲辰乞勿絶倭使疏」¹⁾를 중심으로, 그 밖의 관련자료도 함하여 일본과도 修好문제를 통하여 보여지는 퇴계의 外交姿勢 및 그것으로부터 짐작되는 정치외교사상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으로 하고 싶다.

II. 壯年期의 經歷과 政治活動

李朝의 중앙정치기구는 議政府, 六曹(吏曹·戶曹·禮曹·兵曹·刑曹·工曹로 되어 있음) 및 承政院이 있고, 처음에 육조는 의정부에 종속한 기관과 같은 형태를 취하였지만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서 왕의 직속 기관이 되고, 의정부는 왕의 자문기관과 같은 형태로 되었다고 한다. 승정원에는 6명의 承旨를 두어 육조와의 연락을 꾀하였다. 그 밖에 司憲府(관료의 不正과 失政을 糾察함)와 司諫院(왕에 대한 諫諍과 論駁을 행함)이 있고, 兩者를 총칭하여 台諫이라고 부르고 있다. 藝文院(왕의 敎書 등을 判撰), 그리고 四館이라고 칭하여 承文院(事大·交隣의 외교 문서를 判撰), 校書館(經籍의 간행), 成均館(高等文官 양성의 유일한 국립대학)이 있었다.²⁾ 이들의 조직은 왕을 직접 보필하는 기관이고, 그 외에 왕의 政事를 기술하며 국사편찬의 임무를 맡은 春秋館이 있고, 經筵館은 왕에게 경전과 史書를 강의하며 古今의 역사와 時政에 대하여 論評을 행하는 관직으로서 또한 왕을 補任하는 중요한 직분이었다.

1) 『陶山全書』(한국정신문화연구원刊)一, 積內集, 권6, 敎·疏, p.160

2) 韓祐勳: 『韓國通史』, pp.251~253

靑·壯年 시대의 퇴계는 34세의 3월, 科學의 大科인 文科에 급제하여 高等文官이 된 이래 前述한 중앙정부기구 내에서 중요한 직위를 역임하고 있다. 지금 본 논문과 관계되는 기간, 그의 직분을 연령순으로 열거하여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³⁾

- 34세(甲午, 中宗 29년, 1534년)
 - 4월, 承文院權知副正字
 - 藝文館校閱(正9品)兼春秋館記事官, 바로 교체되어 承文院副正字(從9品), 6월, 同正字
 - 12월, 務工郎博士(正7品)
- 35세(乙未, 中宗 30년, 1535년)
 - 6월, 護送官으로 파견되어, 倭奴를 東萊로 보낸다.
- 36세(丙甲, 中宗 31년, 1536년)
 - 3월, 宣務郎
 - 6월, 成均館典籍中學教授(正6品)에 陞任.
 - 9월, 戶曹佐郎(正6品)
- 37세(丁酉, 中宗 32년, 1537년)
 - 4월, 宣敎郎을 받다.
 - 5월, 承訓郎
 - 9월, 承議郎(正6品)
(모친 박씨 沒, 선생 6품에 올라 外職을 얻어 모친을 봉양하고 싶었지만 當路에 沮止됨에 따라 서울을 떠나 服喪·疾病을 얻어 재기불능에 이름.)
- 39세(己亥, 中宗 34년, 1539년)
 - 12월, 弘文館副修擇, 같은 날 修撰知製敎에 陞任, 經筵檢訂官을 겸하다.
- 40세(庚子, 中宗 35년, 1540년)

3) 『增補退溪全書』(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刊) 4, 언행록 권6, pp.115~121

- 正月, 司諫院正言, 조정에 소환되다.
 - 2월, 奉訓郎, 奉直郎에 陞任.
 - 3월, 承文院校檢을 겸하다.
 - 4월, 知製敎
 - 司憲府持平(正5品)
 - 入對하여, 旱拔이 심하므로 刑罰人을 赦免시키고 있지만, 이것을 본래 至誠의 정도를 가지고 행하여야 할 일로써, 旱拔에 의하여 자주 赦免한다면 奸人만을 즐겁게 하고, 衆善은 해를 받고 犯者 忌憚하는 바가 없으며 그 弊가 적지않음을 啓上하다.
 - 9월, 刑曹正郎(正5品)
 - 承文院校理(正5品)를 겸하고, 弘文館副校理에 任官하다.
 - 經筵侍讀官 및 春秋館記注官을 겸하다.
 - 10월, 弘文館校理(正5品)에 陞任.
 - 11월, 通善郎
- 41세(辛丑, 中宗 36년, 1541년)
- 3월, 入對, 經筵啓事.
 그 때에 牛疫이 심하여 왕에게 啓上한 바가 대체로 아래와 같다.
 五行志에 말하기를 土가 만물을 낳고, 土氣가 양육되지 않으면 稼穡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에 있어서 牛禍가 있고, 前冬에는 地震의 變이 있었으며, 지금 癘疫인 牛疫이 일시에 퍼지다. 古人의 말이 진실로 거짓이 아니다. 봄 이래 雨天하여 土脈이 축축히 적혀 지지 못하고, 凶荒의 징조는 벌써 보이고 있고, 농사 또한 점쳐 볼 수 있다. 災異가 疊出함이 금일보다 심한 것은 없었다. 원컨대 임금께서는 더욱 修省을 하시오…라고. 漢의 明帝의 故事를 인용하여, 天人相應의 理에 기인한 바로 內實을 다한 誠이라면 그 應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고. 『易』, 『中庸』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결국 대체로 學措의 일은 人心을 합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으로서, 人心이 和하면 災異를 면할 수 있다고 上言하다.

- 4월, 司憲府持平
 - 5월, 弘文館修撰, 副校理에 陞任.
 - 10월, 世子侍講院文字(正5品)를 겸하다.
 - 12월, 병환으로 사직하고, 成均館典籍에 임명되고, 또한 刑曹正郎이 되다.
- 42세(壬寅, 중종 37년, 1542년)
- 2월, 弘文館副校理, 舊職을 겸하다.
 - 3월, 入對, 經席臨文, 이하와 같이 啓上.
 一代가 興起하기에는 一代의 규모가 있다. 東漢의 光武帝는 外戚을 받들지 않았지만, 그 망할 때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외척의 세력 때문이었다. 창업의 군주는, 친히 규모를 세우지만, 자손은 이것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 國事를 그르쳤다. 章帝 또한 賢君이었지만, 그때 처음부터 外戚專擅의 조침이 있었다. 무릇 讀史는 마땅히 治亂의 말미암은 바를 보아야 할 것으로 그러한 연후에 유익한 점이 있는 것이다.
 - 議政府檢詳(正5品, 御史에 差任되어 忠淸道에 내려가 郡邑救荒의 能否를 檢察하여, 4월에 復命함.
 - 上(王)이 引見하여 救荒의 방법을 묻다. 아래와 같이 啓上.
 옛날에 말하기를 나라에 3년의 蓄財가 없으면 나라이면서 나라가 아니다. 지금 一歲凶歉하여 公私窘匱한 것이 이와 같다. 今年에 만약 농사를 실패하면 救荒의 일이 형태를 이룰 수가 없다. 常時의 經費는 撙節畜儲하여, 그러한 연후에 下慮의 재난이 있어도 窘急의 患이 없을 것이다. 또한 公州判官 印貴孫은 悖戾貪汚하여 荒政을 삼가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다. 一王이 이에 따르다.
 - 5월, 通德郎, 舍人(正4品)에 올라, 承文院校勘, 侍講院文學을 겸하다.
 - 8월, 韓巖李公을 進송하면서 고향에 돌아가다.

- 災傷 御史로 파견되어 강원도에 가다.
- 12월, 司憲府掌令(正4品)
- 43세(癸卯, 中宗 38년, 1543년)
 - 2월, 病으로 사임하다. 宗親府典籤에 拜授되고, 또한 掌令에 拜授되었다가 典設司守로 옮기다.
 - 6월, 朝奉大夫
 - 7월, 成均館司藝
 - 承文院校勘, 侍講院弼善을 겸하다.
 - 8월, 朝散大夫, 司諫院司諫에 승임되었던 것도 病으로 미처 拜授되지 못하고, 司僕寺僉正에 拜授되다.
 - 10월, 成均館司成(從3品), 還鄉省墓를 바라다.
 - 11월, 禮賓寺副正에 임관되었으나 부임하지 않다.
 - 12월, 奉判大夫
- 44세(甲辰, 中宗 37년, 1544년)
 - 2월, 弘文館校理로서 소환되다.
 - 4월, 世子侍講院左弼善에 임관되어도 病 때문에 拜授되지 못하다. 司憲府掌令에 임관되다.
 - 6월, 病 때문에 사임하다. 옮겨서 成均館直講에 拜授되고, 또한 弘文館校理에 拜授되다. 病 때문에 잇따라 宗親府全籤에 임명되다.
 - 8월, 弘文館應敎
經筵侍講官, 春秋館編修官, 承文院校勘을 겸하다.
 - 9월,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가다. 10월, 조정에서 돌아오다.
 - 11월, 中宗 昇遐하다.
(朝廷, 使臣을 天朝에 파견하다. 告訃請諡의 兩表는 모두 선생이 짓고 쓴 바다. 中朝에 이르러 미친 바로 禮部官이 嘆賞하여 말하기를 表辭가 甚히 좋고, 書法 또한 妙라고 使臣이 돌아와서 그 일을 啓上하다. 命하여 말을 下賜하다.)

○ 45세(乙巳, 仁宗 元年, 1545년)

- 正月, 遠接使從事官으로 파견될 예정이었으나 병 때문에 가지 않았다.
- 3월, 병으로 內瞻寺僉正이 免除되다.
- 4월, 奉正大夫, 옮겨서 軍資監僉正에 拜授되다.
- 5월, 中訓大夫.
- 6월, 弘文館應教에 拜授되고, 同典翰(從3品)에 승임된 겸직은 前과 같다.
- 7월, 仁宗昇遐, 明宗即位
- 상소하여 倭人의 화친 희망을 허락할 것을 請謁하다. (상소문은 이하의 논고에서 고찰한다.)
- 8월, 中直大夫, 병 때문에 관직을 사임하고, 通禮院相禮에 임명되다.
- 9월, 司饗院正, 또는 弘文館典翰에 拜授되어, 겸직은 前과 같다.
- 10월, 李芑 啓, 職에 대한 削職을 청하다.

(그 때에 權奸이 用事하여 土禍가 크게 일어나고, 誅竄이 계속되므로 사람들은 발을 무겁게 하여 섰다. 右相 李芑는 더욱 凶險하여 土論이 자기에겐 함께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남김없이 자기 자신과 달리하는 자를 버려 衆口를 拮制하고자 하여, 闕下에 이르러 홀로 왕에게 啓上하였다. 近日에 죄가 판정되어 처분도 행하여졌지만, 다만 朝臣에게는 아직 파면되지 않은 者가 있어서, 李天啓 등 數人이 함께 파면되기를 청했다. 거기서 퇴계선생은 丁公煥 등 數人과 함께 동일 削職되었다. 朝野가 놀라서 분노하였다.)

- 命을 내리어 職牒을 돌려 주다.

(李芑의 姪, 校理 李元祿이 평소 퇴계선생을 존중하였던 터라 힘써 芑를 諫하였다. 林百齡은 芑의 黨이었지만, 역시 芑에게, 李某는 謹慎自守, 사람과 함께 아는 바이다. 지금 만약 이 사람에게 죄를 준다면, 사람은 반드시 前日의 죄를 받은 자도 모두 誣枉한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쓰는 闕下에 이르러 前啓가 소상하지 않음을 謝하여, 牒을 還給할 것을 청하였다. 때문에 이 命이 있었다.)

- 司僕寺正, 兼承文院參校
- 11월, 通訓大夫를 받아 迎接都監郎廳에 파견되다.
- 46세(丙午, 明宗 元年, 1546년)
 - 2월, 休暇를 얻어 고향에 돌아가 外舅 權公碩을 葬事하다.
 - 5월, 병으로 미처 조정에 돌아가지 않아 해직되다.
 - 7월, 부인 權氏 卒하다.
 - 8월, 校書館校理에 임명되어 承文院校理를 겸하다.
 - 11월, 禮賓寺正에 임명될 것이었음에도 모두 부임하지 않다.
 - 養眞庵을 퇴계의 東巖에 건축하다.
(이것보다 먼저 퇴계선생은 小舍를 溫溪의 南, 芝山の 北에 만들었으나, 人居稠密하여 매우 幽寂하지 않음으로써 이 해 처음으로 퇴계의 아래 數三리에 假寓하여 東巖의 곁에 小庵을 짓고, 命名하여 養眞溪라고 하였다. 俗名은 兎溪라고 하고, 兎를 退로 고쳐서 자호로 하였다.)
- 47세(丁未, 明宗 2년, 1547년)
 - 7월, 安東府使(正3품)에 임명되어도 부임하지 않다.
 - 8월, 弘文館應校(正4品)에 拜授되고, 겸직은 前과 같다. 조정에서 소환되다.
 - 12월, 병 때문에 사임하고, 儀賓府經歷(從4品)에 임명되다.
(그 때에 국론이 점점 乖繆가 있어, 兩司와 弘文館이 번갈아 글을 올려 鳳城君을 斷罪할 것을 청하다. 퇴계선생이 힘써서 중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병으로 모면하다.)
- 48세(戊申, 明宗 3년, 1548년)
 - 正月, 外補를 원하여 丹陽郡守에 拜授되다.
(선생이 外職을 바란 것은 深意가 있었고, 靑松郡守를 원했으나 얻

지 못하고서 丹陽郡守에 拜授될 수 있었다. 그의 治郡은 誠信懇惻, 政事淸簡, 吏民 모두 이것을 便習하였다고.)

- 2월, 子 窠의 喪을 듣다.
- 8월, 釋奠을 鄉校에서 奉行하다.
- 9월,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가서 省墓하다.
- 10월, 바꾸어 豊基郡守에 拜授되다.

(兄 大憲公이 忠淸道の 監司가 되고, 丹陽郡守는 그의 部下가 되었기 때문에)

○ 49세(己酉, 明宗 4년, 1549년)

- 2월, 釋奠을 鄉校에서 奉行하다.
- 9월, 병 때문에 辭狀을 監司에게 送呈하다.
- 12월, 監司에게 書簡을 올려 白雲洞 서원의 扁額 및 書籍의 頒降을 왕에게 啓聞하기를 청하다.

(白雲洞은 豊基郡의 北, 小白山 下, 竹溪의 上에 있고, 前朝 安文成公 裕의 故居이다. 周世鵬이 郡守가 되어 비로소 서원을 거기에 창립하고 文成公을 享祀하고, 또 諸生遊學의 居所로 하였다. 선생이 생각컨대 東方에는 이전 서원이 없고, 지금 비로소 서원이 창립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교육은 上位에 말미암지 않으면 아마도 결국은 廢墜할 것이라고. 監司에게 上書하여, 宋朝의 故事에 의하여, 書籍을 頒降하고, 扁額을 宣賜하고, 겸하여, 土田·藏獲을 支結하여 학자로 하여금 依歸하도록 轉聞할 것을 청하였다. 監司 沈通源은 조정에 轉聞하여 여기에 호를 賜送시켜, 紹修書院이라고 하고, 大제학 申光漢은 記를 짓고, 四書·五經·性理大全 등을 頒降하였다. 서원이 선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 병 때문에 세 번째 監司에게 말하여 解官을 청하고, 答報를 기다리지 않고서 돌아도다.

○ 50세(庚戌, 明宗 5년, 1550년)

- 正月, 擅斷하게 任所를 拋棄하였기 때문에 告身二等으로 박탈되

다.

· 2월, 비로소 퇴계의 西便에 卜居하다.

(이보다 먼저 땅을 霞明洞 紫霞峰 下에 얻어 室家를 미처 營告하지 못하고서, 또 竹洞으로 옮기고 洞의 狹隘와 溪流가 없음을 들어서 溪上에 卜居하였다. 생각컨대 三還하여 居所를 정하였던 것이다.)

· 寒栖庵을 짓다(이로부터 從遊의 士가 날로 많아졌다).

· 龔巖李公을 汾川에서 拜謁하다.

· 4월, 光影塘을 鑿井하다.

· 8월, 兄 左尹公 瀧의 訃音을 듣다.

(左尹公은 일찌기 司憲府에 있었고, 李芑와 論하여 맞지 않았다. 그가 右相이 되고, 여기에 이르러 李芑의 꾸밈이 있어, 杖罪에 함몰하여 표류하는 道程에 沒하다.)

이상, 퇴계가 34세의 3월, 科擧의 大科인 高等文官시험 ‘文科’에 급제하여 同4월 出任하여서부터 49세 12월, 세 번 사표를 監司에게 제출하여 허가되지 않은 중에 풍기군수 임명을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50세 2월 처음으로 퇴계의 西便에 卜居하기까지 대체로 15년간 쫓아서 써 보았다. 이 시기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소위 經綸의 역량을 발휘한 가장 정리된 시기로서 50세 이후 沒할 때까지는 가끔 召命이 있었지만 거의 사양하고 出仕하여도 단기간이다. 다만 50세 이후 그가 그 당시의 爲政 등에 관한 발언에도 극히 중요한 것이 얼마간 있지만, 계속하여 出任한 것은 上記의 기간이다. 더구나 이 기간 모친의 3년 服喪(실제 臺閣을 떠난 것은 2년하고 수개월 정도라고 생각된다)이 있고, 또한 47세 때에는 7월에 安東府使에 임명되지만 부임하지 않고 48세의 正月부터 지방관으로서 丹陽郡守의 임무를 맡고 잇달아서 豊基郡守로 옮기며 47세 12월 同郡守의 임무를 떠나는 기간, 결국 2년간은 중앙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겨우 10년이 되지 않는 단기간이 퇴계의 구체적인 정치활동의 시기였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가 주로 어떠한 중앙정부의 役職을 맡았는지 上記의 經歷을 概觀하여 보면 제일 在職기간이 길었던 것이 承文院과 弘文館의 일이고, 거기에 成均館 교수 등의 직책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외의 중요한 職務로서는 經筵官, 世子를 위한 것을 포함한 侍講官, 司憲府의 일, 議政府의 일 등에 맡겨지고 있다. 이들의 직무는 여하간 왕이 직접 임명하는 요직이고, 직접 왕의 補佐役·輔弼의 임무에 해당 하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외교 및 외교문서의 작성, 왕의 대내적 문서의 작성, 司法(裁判·訴訟·法律 등에 관계되다), 監察, 教育(成均館을 중심으로 한다), 국왕 및 세자에 대한 侍講과 直諫의 역할 등등이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役職을 몇 개 째 겸임하였지만 正3品 이상의 직위에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役職의 최고책임자의 경험은 가지지 않았다. 학자로서의 자기의 입장과 자세를 그는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두드러진 정치적 활동으로서는 40세 때 旱拔과 관계되는 형벌의 赦免에 至誠으로 임하여야 한다고 하는 上言, 41세 3월, 牛疫·地震·旱拔 드의 災異가 속출하는데 있어서 국왕의 정치에 대하여 많은 修省을 주어 人心의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 上言, 42세 3월, 讀史는 마땅히 治亂의 연유로 흥기하는 바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上言, 同年 나라에 3년의 備蓄이 있어야 비로소 救荒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上言, 지방관의 汚職을 문책하여야 한다고 하는 上言, 45세 7월, 倭人의 화친을 청하는 바에 대한 정책에 관계되는 上言(後論), 同10월의 土禍에 있어서 퇴계가 취한 태도, 48세 때 단양군수로서의 활동, 49세 때 풍기군수로서의 서원 作興의 활동 등등은 연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퇴계의 정치활동상 특기하여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국왕된 자가 정치에 있어서는 至誠으로서 공정을 가지고 임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 중국 유학의 古典에 서술된 爲政의 근본정신을 治者로서의 몸을 가지고 體現하여야 한다는 것, 天變地異가 일어나는 것은 治政의 缺失 때문에 있다는 것으로 思慮하여 국왕 자신이 많은 반성을 더 하여

야 한다는 것, 救荒對策을 비롯하여 人心의 和습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관이 治民에 공정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진술되어 있다. 또한 군수로서 퇴계 자신의 구체적인 활동 및 그 근간이 되는 사상에도 着目되지 않으면 안된다(이 점에 대하여는 後論).

이상과 같이 이퇴계의 장년기에 있어서 정치활동 가운데 본 논고에서는 먼저 그의 외교에 관한 문서를 통하여 거기에 나타난 퇴계의 정치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Ⅲ. 對異民族 政策에 있어서 퇴계의 기본사상

前項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퇴계의 장년기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役職으로 가장 재임기간이 길었던 것은 승문원, 홍문관, 성균관의 일이었다. 이 가운데 승문원은 事大·交隣의 외교문서를 判撰하는 役所로서 여기에 근무하는 者는 儀典과 외국정세에 밝고 문장가로서 재능도 필요로 하였다(鄭飛石: 『李退溪小傳』 참조). 퇴계는 이 직분에 있을 때 「甲辰乞勿絶倭使疏」를 썼다. 申辰은 1544년이지만 『퇴계문집』(성균관대학교 刊本)의 「考證」에 의하면⁴⁾ “案年譜·言行錄及疏中大意·皆是乙巳秋事甲辰字恐誤”라고 있고, 「年譜」도 「言行錄」도 上疏文中의 大義를 보아도 모두 乙巳, 결국 1545년, 仁宗 元年 秋의 일로서 申辰은 틀린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퇴계가 45세 때의 일로서 왜인의 使者가 화친을 청하여 來朝한 것에 대하여 이것을 거절하지 않도록 上疏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된다. 지금 이에 따라서 논술하려고 한다.

먼저 이 시기 중앙정부 部内の 상황을 보면 이보다 먼저 1519년 趙光祖 등의 新進 士類가 中宗의 정치개혁노선에 따라서 유교적인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등장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서 年輩의 관료나 종래의 功臣들의 반발을 사서 조광조 등은 文敗하여 다시 일

4) 同上書 4, 퇴계문집고증 권3, p.497

어설 수 없어서 정권의 場으로부터 추방되고, 이후 약 20년간은 權臣의 사이에서 정권의 쟁탈이 반복되는 시기였다. 그것은 주로 中宗의 이복 형제 사이에 일어난 왕위계승문제를 둘러싸고 外戚 사이에 전개된 紛爭이었다. 그 위에 1544년 中宗이 死去하여 中宗 第一 繼妃의 세자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것이 仁宗이고 그 翌年 仁宗이 死去하여 이번에는 中宗 第二 繼妃의 세자가 왕위를 이어 明宗이 되었다. 中宗 在世 당시부터 이미 外戚 사이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알력이 있어, 明宗 즉위에 의하여 그 외척일파는 반대 세력인 仁宗의 외척일파를 정권으로부터 추방하려고 하였다(1545년). 이러한 외척간의 대립과 알력에 양반관료들로 말려들어 이것이 또한 중앙정계의 알력과 혼란에 증폭을 더하였다.⁵⁾ 이러한 이조 전기의 정권쟁탈기에 倭의 使者가 修好를 요구하여 온 것이다.

그때에 퇴계는 45세, 中訓大夫·弘文館典翰·知制教·兼經筵侍讀官·春秋館編修官·承文院參校하고 하는 국왕을 직접 보필하는 從3品の 지위에 있는 시기였다. 특히 그가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외교문제에 종사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倭人の 修好를 요구하는 使者의 來朝에 어떻게 대응할까에 參議하고 또한 그 對應文書를 判撰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하 퇴계의 상소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의 외교사상을 고찰하도록 할 것이다.⁶⁾ 먼저 퇴계가 夷狄에 대응할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臣伏以人有恒言 皆曰夷狄禽獸 夫夷狄亦人耳 乃此於禽獸者 非國甚言之也 爲其不知禮義 無君臣上下之分 而其爲生也 蚩蚩蠢蠢 冥頑不靈 殆與禽獸

5) 韓祐欣: 『한국통사』, pp.298~9

6)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서는 安炳周 교수의 퇴계의 일본관(퇴계선생탄생 48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보고·1981년)이 있지만 이 논문은 標題와 같이 퇴계의 일본관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상소문을 취급한 것으로서 본 논문에 있어서는 퇴계의 외교사상 내지는 정치사상으로서 그 특징을 명확하게 하는데 힘쓰고자 한다.

無異 故取類而並稱之爾 故以禽獸蓄禽獸 則物得其性 以夷狄待夷狄 則夷安其分 故王者不治夷狄 春秋錄戎 來者不拒 去者不追 治之以不治者 乃所以深治之也 若乃執君臣上下之分 而責禮義名教之道 必欲與之辨是非 爭曲直正逆順 而後爲快 則是所謂督禽獸以行禮樂之事 求以擾其心 適以逆其性 不搏則噬矣

라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항상 夷狄이 禽獸라고 하지만 夷狄도 사람이다. 이것을 禽獸와 비교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의를 모르며 君臣이상의 分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夷狄은 어리석어서 보기 흉하고, 다만 이유를 모르면서 떠들며, 완고하고 영리하지 못하여 거의 禽獸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類例를 들어 禽獸와 나란히 호칭할 뿐이다. 그러니까 禽獸를 가지고 禽獸를 기른다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보면 物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고, 夷狄을 가지고 夷狄을 대접한다는 하는 기본에서 보면 夷狄도 자기의 分에 만족한다. 때문에 王者는 夷狄을 (직접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春秋』에도 戎을 기록하여 “오는 者는 거부하지 않고 가는 者는 쫓지 않는다”라고 있는 것처럼 夷狄을 다스리는 데에는 ‘不治’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깊게 이를 다스리는 所以이다. 만일 그들에게 君臣이하의 分을 행하게 하고, 禮義名教의 道를 구하게 하면 그들은 반드시 그 나타내는 (여기에서는 유교적) 君臣上下의 分과 禮教와 그들의 행하여 지키는 非의 是非·曲直을 가려 닦고 어느 것이 逆이며 順인가를 바르게 한 연후에 좋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소위 禽獸를 督勵하여 禮樂을 행하려고 구하여 그들의 心을 요란하게 하여 適正되게 하려면 도리어 그 본성에 거역되어 鞭杖으로서 이것을 치지 않으면 물고 늘어지는 데 이른다. 이상이 그 大意이다.

이를 보면 퇴계는 夷狄도 인간이지만 그들은 禮教의 道를 모르는 野人으로 비천하기 때문에 禽獸라고 불리어진다고 하고,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데는 ‘禽獸로서 禽獸를 기르고 夷狄으로서 夷狄을 접대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헛되이 禮教의 道를 행하게 하려고 하면 그들

이 가지고 있는 것과 是非·曲直·逆順 때문에 다투게 되어 깊게 다스리는 所以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퇴계에 있어서 夷狄은 인간이지만 文化를 가진 인간이 아니었다. 혹은 퇴계에 의하면 그들 夷狄은 유교문화권과 다른 문화생활권에서 사는 인간으로 포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不治의 治’가 최적의 治라 하고 마치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취급되었던 異民族(당연히 그 경우는 夷狄으로 되었다)에 대한 ‘羈縻政策’(주변 약소민족의 自治에 의한 간접통치)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立論되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거기에는 前掲와 같이 “來者不拒 去者不追”라고 하는 通和修好의 기본정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來者不拒”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퇴계는 苗民(苗族)이 叛悖하였을 때, 大禹는 이를 征討하여도 더욱 완고하게 복종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이윽고 羽舞를 추고 와서 이들을 받아 주었다는 故事를 인용하여 “아직 舊惡을 생각하여 그 위에 이를 거부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조금도 玁狁(周代 북방에 있었던 민족)이 內侵하여 京邑에 逼近하는 것은 이미 叛逆이 크지만, 이를 치는 데 國境을 내놓았을 뿐이었고 “아직 역순을 분명히 하여 오래 이를 끊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上言하고 있다. 李朝期에 있어서는 선진문화를 自慢하여 ‘中華’라고 자칭하였던 중국과 사대적 교린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人士는 퇴계를 포함해서 중국 이외의 내륙 아세아민족이나 倭國은 당연히 중국 문화를 공유하지 않은 夷狄이었다.

하물며 고려말 이래 沿岸各地 일대를 침략하였던 倭寇는 李朝에 들어와서도 중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李朝는 일본에 使節을 보내서 왜구를 禁壓할 것을 足利政權에 요청하여 西일본의 大小豪族도 이에 협력하여 通商을 바라고 있었다. 특히 대마도의 島主 宋氏에게는 倭寇禁壓의 책임을 짊어지게 함과 동시에 貿易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조초기에는 일본의 足利幕府와 서쪽의 大小豪族의 使節船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또한 商人의 興利船도 섞여 있었다. 거기에서 李朝는 그들 興利船의 渡來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 停泊地를 경상도 沿岸의 東萊 富山浦와 熊川

乃而浦(齋浦)에 한하여 인정하고 그들의 領主로부터 ‘文引’이 교부된 자에게만 교역을 허가하였다. 이 사이에 왜구의 침략은 그치지 않고 世宗元年(1419)에는 그 巢窟이었던 대마도를 대규모의 兵力으로 討伐한 일이 있었지만 이윽고 倭人에 대한 융화책이 채택되어 倭船의 停泊地도 上記의 二浦 외에 蔚山の 鹽浦를 더하여 三浦로 하였고 대마도 島主와도 조약을 맺어(1443년, 世宗 25년) 무역을 위한 船數·米豆 등의 品物의 수량 등을 제한하였다. 15세기 중엽 이후 私貿易이 증대하여 密輸도 성행되어 倭人과의 분쟁이 원인이 되고 15세기말에 李朝는 私貿易의 取締를 단행하였다. 中宗代에는 이에 불만을 품은 倭人(대마도 島主를 포함)들이 三浦에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李朝는 이를 진압한 후 三浦를 閉鎖하고 말았다.

그 후 대마도 島主가 궁리하여 通交를 요청하여 왔기 때문에 中宗 7년(1512년)의 壬申約條에 의하여 世宗시대의 癸亥約條의 약 반의 무역량으로 축소하여 인정되었다. 또한 倭人이 三浦에 거류함을 금하고 齋浦의 倭館만을 허가하였다 이에 의하여 당시 일본의 小豪族이나 商人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⁷⁾ 본 상소문은 이러한 三浦倭亂 이후의 시점에 있어서 대외정책의 기본이 되는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도 좋다. 이상 약술한 對日관계 및 삼포왜란의 반란에 대하여 퇴계는 이하와 같이 포착하고 있다.

퇴계에 의하면 ‘島夷蛇梁의 變’은 ‘狗鼠의 偷’에 지나지 않고 이미 賊徒를 죽이고 이를 퇴각시켰으며 또한 留館(倭人을 위한 居留館)을 없애고 寇人을 放逐하였기 때문에 國威는 이미 떨치고 왕법도 또한 바르게 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왜인을 國威를 두려워하고, 陰德에 부끄러워 하며, 마음을 바꾸어 과오를 고쳐 그 倭亂은 타인이 일으켰던 나쁜 것처럼 말하고, 大邦을 삼가히 하여 스스로 所爲를 변명하고, 머리를 숙여 빌고, 搖尾를 계속하여 憐憫을 받고 있다. 이때에 있었던 우리 朝廷의 취해야 했던 태도는 유감이다. 퇴계는 말한다.

7) 前掲 한국통사, p.247 이하 참조

王道蕩蕩 不逆詐 不億不信 苟以是心至 斯受之而已 則今之倭奴之請 若在可許而猶不許 然則未知時而可許乎 夫延臣之欲拒倭奴者 其意必曰 彼罪大矣 今甫絕而遽和之 則無以徵其惡而有納侮 是亦似矣 而有大不然者

王道는 蕩蕩하여 넓게 고루 미치고, 또한 “거짓을 迎合하지 않고, 不信을 思慮하지 않는다”⁸⁾—결국 감히 타인의 마음을 忖度하는 데 腐心하지 않고, 타인의 불신을 臆測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賢者이고, 진실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倭의 請을 받아 들일 뿐이다. 倭奴의 請을 지금 허락하여야 하는데 더욱 이것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어느 때에 허락할 것인가? 延臣으로서 倭奴의 請을 거부하는 者는 반드시 그들의 죄가 크며 처음에 이것을 거절하여 다음에 훨씬 이들과 화친을 통하면 侮辱를 받아서 後悔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一見 이치에 맞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크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퇴계는 거기에서 匈奴가 漢의 高帝를 平城에서 포위했을 때 孝惠高后는 그때의 匈奴王에게 서간을 보내어 悖慢하고, 高帝를 自脫시키고, 다음의 惠帝는 言辭를 낮게 하여 화친을 청하였다는 것, 五代之 文帝 때 匈奴가 蕭關에 침입하여 張相如·欒布 등에게 이를 격퇴시키세 하였지만, 要塞을 나오지 않는데 이르러 還兵시키고, 서간을 보내서 和約하였던 것이 家人·父子가 서로 친하게 됨과 같았다는 것, 또한 匈奴가 背約하여 다시 雲中에 침입하여 심하게 殺掠하므로 烽火가 甘泉·長安에 알렸을 때 文帝는 또한 六將軍에게 명하여 분담하여서 대비하였을 뿐 月餘에 匈奴의 要塞를 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곧 배려하여 병사가 싸우는 것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것 등을 들어서 “이 數君은 흉노의 罪가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곧 이를 급급하여 화친을 맺은 것은 참으로 禽獸의 여건과 비교하여 부족하고 生民의 禍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夷狄을 禽獸로 보는 것은 此較 대조의 밖에 두

8) 『論語』, 憲問, 제14, 「子曰 不逆詐 不億不信 抑亦先覺者 是賢乎」에 의한다.

고, 그들과 화친을 맺은 所以는 오로지 걸리는 것이 우리 生民의 禍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하여 이 節을 맺고 있다. 그래서 現今 倭人에 의한 三浦作亂의 偶發事는 이를 저 중국의 故事에 비교하여 보면 죄가 귀착되는 것은 같아도 彼(중국)·我的 輕重에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찌서 그들 倭人의 自新의 길을 허가하지 않고 도리어 禍를 우리 赤子에게 초래하고 있을까라고 퇴계는 말한다.

이어서 퇴계는 唐代에 突厥이 병사를 몰고 入寇하여 渭水便橋의 北에 이르러 화친을 청하였을 때 太宗이 이 청을 허락하였던 것, 宋代에 契丹이 대거 入寇하여 澶淵에 이르러 화친을 청하자 眞宗 또한 이를 허락하였다는 것 등을 들어, 당시 突厥에는 懼心이 있고 契丹은 이미 挫氣하여 있어 二宗이 兩者의 화친의 청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찌서 그것에 의하여 가벼우게 이를 허락한 것이 모욕을 받아들여 悔恨이 남는 것을 모르고, 또한 악한 일을 다시 못하게 하는 계략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논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얽힌 仇怨을 풀고 陵犯의 죄를 묵인하여 이들과 盟好를 맺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兵凶戰危는 社稷을 이롭게 하여 生靈을 편안하게 하는 것 때문에 급하게 하고, 禽獸跳梁의 일은 이를 도외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오로지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또한 퇴계는 夷狄이 禽獸와 같이 邊境을 跳梁하는 것보다도, 중국인에 있어서는 그들에 의하여 야기시킨 兵戰이 어떻게 국가 社稷을 이롭게 하고, 生民의 安寧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優劣성을 두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리하여 퇴계는 古帝王의 御戎의 道가 和를 가지고서 먼저 하였고, 할 수 없을 때 兵을 사용한 것은 그 禽獸가 사람을 핍박하는 害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害가 제거되면 兵을 그만두어 심한 고통을 주어 도리어 元한을 산 博噬의 患難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古帝王이 취한 夷狄應接의 사상·방법에 대하여 李朝가 당면한 對倭施策의 기본이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때마침 조정에 一說이 있었고, 퇴계는 이에 줄곧 언급하여 드디어 倭人의 請和에 대하여 구체적

인 의견을 上言하였다. 즉,

抑又有一說焉 與夷狄和親之道 固當有操縱伸縮可否之權之勢 而此權此勢 必常令在我 而不可令在彼也 臣亦知 朝廷之意以此爲重 而爲是堅拒之議矣 然有罪則絕之 自新則許之 此正權勢之在我而施 當其可也 當其可之謂時 何可違也 有其權志其勢 而無心以處之 則彼必以爲大德而感悅於其心 相率而投款矣 是所謂化之 和不足言矣 有虞之於苗民 用此道也 而今日之所當法也 今也不然 操其權挾其勢 固沮其向善之心 而不肯許之 則物我相形 彼此角立 蠢茲小醜必將大爲怨恨 而啓後日無窮之患矣

라고 하였고, 一說에 夷狄과 화친하는 방도로는 이를 操縱 伸縮 可否를 결정하는 權·勢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權·勢는 우리 쪽에 있어야 하고 저쪽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서 조정은 이 사고방식을 중시하여 굳게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여 죄가 있으면 화친을 끊고, 反省自新하면 이를 허가한다고 하는 주체성은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좋다고 하는 時宜를 잃지 않는 것이다. 본래 화친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權도 勢도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요는 ‘그 權을 계속 보유하는 그 勢를 잊어버린다’는 것에 의하여 진심으로 하여 대응하면 倭人은 반드시 그것을 큰 德으로 생각하여 그 마음에 感悅하고 서로 끌리어 投降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이들을 化한다’—상대자의 마음이나 태도를 바꾸어 다른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감히 화친을 교류한다고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다. 금일 우리 조정에서는 이 ‘化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법도에 맞는 방도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우리 권세를 붙잡아 거드랑이에 끼고 倭人이 善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마음을 굳게 저지하여 화친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서는 반드시 우리와 저들과는 서로 角逐하게 되고 큰 원한의 원천이 되어 후일에 무궁한

患難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라고. 이 未尾의 “必將大爲怨恨 而啓後日無窮之患矣”의 一節은 이윽고 到來하려고 하는 ‘임진왜란’을 명확하게 예언한 것으로서 퇴계의 憂國의 深情과 통찰력에 감명받은 것을 빼놓을 수 없다.

퇴계가 주장한 요점은 倭人이 칭하는 화친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教化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上記의 인용에도 있었던 것처럼 倭人과 대등한 和를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문화적 우위와 修好를 허용하는 쪽의 주체적인 권위(퇴계는 勢=力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에 바탕을 둔 입장이 보인다. 더구나 그것은 現今을 제외하고는 時宜에 맞는 때가 없다고 말한 점을 가미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고 間隙이 벌어져 兵火가 일어나면 이미 이들을 교화하려고 하여도 倭人의 마음은 심하게 변경되어, 이들과 화친을 통하려고 하여도 그 權·勢는 벌써 전연 우리 쪽에 있을 수 없고, 우리와 저들과는 分與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서 和를 구하는 것과 權·勢가 우리에게 있어서 저들의 祈哀를 듣는 것과는 後者에 필적할 것이 없고, 백성을 鋒鏑(兵器, 刀과 矢)으로 毒하게 만들어 놓고서 화친하는 것과 백성을 愛養하여 蕩蕩한 王道를 행하는 것과는 後者에 필적할 것이 없기 때문에 퇴계는 “이들이 그 養理·利害의 章章較著한 者가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IV. 朱子 ‘不與共載天’論과의 異同

여기에서 퇴계의 上疏文은 朱子の 상소문에 있어서의 金과 講和不定論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관하여 고찰하려 둘 필요가 있다.⁹⁾ 宋은 당시 극히 강대하였던 북방민족인 金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

9) 拙著: 唐宋間에 있어서 사상의 전개와 그 역사적 성격-無爲自然에서 作爲積極에- p.46 이하 참조.

았기 때문에 金의 노여움을 사서 遼가 멸망한 해의 겨울 金은 남하하여 宋의 首都 汴京(河南省 開卦)에 다가왔다. 거기에서 그 때의 황제 徽宗(1101~1125)은 자리를 欽宗에게 넘기고 反攻을 획책했지만 이윽고 欽宗도 百計無策하여 驅逐을 못하고, 徽宗·欽宗을 비롯하여 一族 3천 사람이 잡혀서 滿洲에 연행되어 宋은 이리하여 일단 멸망하였다. 이것이 靖康의 變(1127년)이다. 이 때 一族의 康王은 南京 歸德府(河江省)에서 즉위하여 南宋을 세웠다. 잇따라서 高宗은 金軍을 두려워하여 揚州로부터 杭州(浙江省)에 이르러 이곳을 行在(驅安府)라고 하였다. 이 靖康의 變은 그 때의 중국인 특히 지식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南宋과 金과는 싸워야 한다는 쪽과 講和해야 한다는 쪽의 和戰兩論으로 격하게 다투었지만 결국 秦檜 등의 和議論이 승리를 거두어 主戰論者는 정부를 떠났다. 朱子の 부친인 朱松도 主戰論者로서 패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父子 2代의 主戰論이 두들겨 맞은 것이다. 失地恢復과 復雙論과는 이념상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극히 구체적이며 역시 朱子에 있어서는 가까웁게 절실한 문제였다. 朱子の 上秦文에는 따라서 이 主戰論을 부르짖고 있으며 金은 '不具戴天之敵'으로 되어 있었다. 朱子 33세 秋 8월, 처음으로 詔에 응하여 對事를 올린 글 가운데에도

然而祖宗之境土未復 宗廟之讐恥未除 戎虜之姦譎不常 生民之困悴已極 方此之時 陛下所以汲汲有爲以副生靈之望者 當如何哉 然則今日之事 非獨陛下不可失之時 抑國家盛衰治亂之機 廟社安危榮辱之兆 亦皆決乎此矣¹⁰⁾

라고 있고, 失地の 恢復, 宗廟讐恥의 배제는, 홀로 元首의 時有를 잃는 것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國家社稷의 權은 모두 여기에 있어서 결저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다. 朱子에 있어서는 「戊午讜議序」에도

國家靖康之禍 二帝北狩而不還 臣子之所痛憤怨疾 雖萬世而必報其讐者 蓋

10) 『朱子文集』, 권11, 壬午應詔卦事

有在矣¹¹⁾

라고 있는 것처럼, 徽宗·欽宗의 二帝 一族이 金虜로 연행되어 얼마 안 되어 살해되었던 것은 臣子의 痛憤怨疾하는 바였고, 本「序」의 冒頭에도 “君臣父子의 大倫은 天의 經, 地의 義로 하여 이른바 民彝가 된다”라고 있는 것처럼, 萬世가 되더라도 반드시 그 怨讐는 갚지 않으면 안된다. 朱子는 그 근거를 『禮記』의 “君父之讐 不與共戴天 寢苦枕干 不與共天下也”(同上, 戊午讜議序)에서 구하여 “이른바 講和는 百害하고 一利가 없다. 무엇을 괴로와 하면서 이를 할 것인가¹²⁾”라고 하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더욱 중요한 일로는,

저들은 더구나 中原을 盜掠하여 金幣를 빼앗고, 全盛勢에 의거하여 和와 不和와의 權을 제어하고, 약간 懦弱해지면 和로써 우리를 기다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힘이 족하면 大舉로 침입하여 와서 우리를 지탱하는 데 미치지 못했다. 생각컨대 저들이 從容으로 和를 제어하고 舌를 蠕蜿하게 하여 進退가 모두 얻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흡사 사람에게 抑首하여 和와 不和와의 命을 듣는다. 國家를 도모하는 者는 다만 虜人이 즐거움을 잃을까를 걱정하여 久遠의 大計를 세우지 않은 채 나아가는 것은, 즉 中原事機의 모임을 잃고 물러서는 것은 즉 忠臣義士의 마음을 막는다. 생각컨대 우리가 급급하여 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志慮가 항상 和의 가운데 빠지고, 이런 점 때문에 앞을 들뜨게 해서 뒤에 좌절하고, 進退를 모두 망친다.¹³⁾

라고 있는 것처럼, 不和와의 주도권을 완전히 金에 빼앗겨 제어되어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그 操術을 다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爲政者는 일념으로 金虜의 환심을 사서 그것을 농칠까를 두려워 하여 국가 久遠의 大計를 잊어, 中原恢復의 契機를 놓치고 忠臣義士의 마음을 막고 있다

11) 同上, 권75, 戊午讜議序

12) 同上, 권11, 壬午應詔卦事

13) 同上, 壬午應詔卦事

라고 서술하고 있는 점이다.

이상은 주로 朱子の 「壬午應詔封事」 및 「戊午讜議序」라는 두 개의 上秦文에 있어서 그의 反講和論과 그에 따른 이론적·사상적 근거를 검토하여 왔지만, 여기에서 上記의 내용에 관련하여 퇴계는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었는가에 그 所論을 듣자면 대개 이하와 같다. 즉,

朱文公曰 金人終始以和之一字愚宋 宋人終始以此自愚 此則與今日之事大不同 宋之君臣忘不共戴天之讐 爲偷安一隅之計 匍匐乞哀於滔天之醜虜 是其操縱伸縮可否之權之勢 在彼不在我而方且甘心聽命 頭指氣使之不暇 而日趨於危亡之域 此當時忠臣義士之所以扼腕而痛心者也

라고 있어, 金人は 終始 講話의 一字로서 宋人을 愚弄하는 데 대하여 宋人は 和를 원하며 오히려 스스로를 어리석게 하고 있다고 하여, 이것은 금일 우리 李朝에 걸려 있는 對外(夷狄으로서의 倭人과의 修好) 문제와는 크게 다르다고 논하고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宋의 君臣은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文화를 가진 中華라고 과시하는 자로서 金人の 所爲가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不共戴天의 怨雙라고 하는 것을 잊고, 匍匐하여 哀恨이 심하고 죄가 큰 滔天의 醜虜에게 빌고, 자신은 一隅에 안락을 탐내는 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하여서는 그 操縱 伸縮 可否의 주체적인 權도 勢도 그들에게 있고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甘心하여 (敵의) 命을 들어 이것 저것이라고 指圖되어 酷使하는데 틈도 없고 날마다 危亡에 빠지게 하여 당시의 忠臣·義士를 扼腕·痛心시키는 所以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이퇴계가 朱子の 上秦文에서 읽어 얻은 宋人の 愚이다. 국토가 半減되고 二帝가 연행되어 살해된 마당에 和와 不和의 이니시아 티브를 상대방에게 빼앗기며, 더구나 不共戴天의 怨讐를 잊고 滔天의 醜虜에게 동정심을 구하는 모습을 퇴계가 인정할 수 없는 일대 反省痛恨事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당시 李朝에 있어서 왜인의 (三浦에서의) 반란에 비하면 이것은 小事이고, 더구나 왜인의 請和에 대하여 李

朝는 아직 이것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계는 “與今日之事大不同”이라고 말한 것이다.

자국내에서 외국인이 그 爲政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반란·폭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큰 불상사이지만 퇴계가 이민족에 의한 국토의 침략이나 王朝存立의 위기에 비하면 삼포반란은 小事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왜인을 不具戴天의 적이라고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 왜인의 修好請和를 승인하려고 한 것은 李朝 국가체제에 대하여 퇴계가 자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後術하겠지만 퇴계는 당시의 국가체제나 邊境의 방비에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夷狄도 금수가 아니고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인간관에 서서, 더구나 請和를 허락하는 것에 의하여 외교의 주도성을 확보하고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夷狄·異民族으로서의 왜인을 교화하는 것이 타당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는 朱子와의 약간 다른 퇴계 獨自의 인간관·외교자세·외교사상과 구체적 방법을 간취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先述과 같이 이민족의 침략에 의하여 국토를 半減시키고, 국가의 체면이 현저하게 손상되었던 南宋의 지식인이었던 朱子가 이민족에 대한 기본적 사고방식은 “古先聖王 所以制御夷狄之道 基本不在乎威疆 而在乎德業 其任不在乎邊境 而在乎朝廷 其具不在乎兵食 而在乎紀綱”¹⁴⁾가 있어, 夷狄를 제어하는 기본의 道는 힘에 의하는 것이 아니며 德業에 있고 治政의 本務는 邊境에 있는 것이 아니며 조정의 그 자체에 있는 것이고, 그 방도는 兵食을 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기강을 바로 잡는데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퇴계가 이해하고 있는 중국 先聖治者의 기본이념과 변함이 없고, 오히려 朱子도 퇴계도 전통적인 對異民族 정책의 기본을 계승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4) 同上, 권13, 癸未重拱秦劄3

V. 李朝國家의 現狀과 對外修好에 관한 퇴계의 방침

3章 및 4章에서 논술한 것은 이퇴계의 이민족에 대한 기본적인 외교 사상이며 朱子가 南宋에 있어서의 反講和論을 편 것을 중심으로 한 이민족의 기본사상이었다. 本章에서는 「甲辰乞勿絶倭使疏」의 후반에 대한 퇴계의 李朝 국가체제의 현상인식과 관련하여 논하여진 對倭外交의 기본 방침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퇴계는 李朝가 一小夷로서 왜인에 대하여 前非를 반성하는 것에 의하여 자신의 활로를 열어 주는 것은, 宋人이 스스로를 바보로 만든 실패를 범한 것과 다르고, 오히려 虜舜이 苗民을 바로잡는 美擧에 유사한 것인데 어찌서 고심하면서 이것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퇴계의 방침은 단적으로 宋人의 自愚를 범하지 않는 古聖王의 遺制를 계승한다고 하는 이념 내지는 이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절실한 李朝 국가체제를 지탱하는 문제상황이 있었던 것에 의한다.

즉, 당대의 임금은 天變을 맞아 人事를 闕失하여 大禍는 重疊하고, 國運은 艱苦하고, 근본은 위태하여 깨지고, 邊圉는 방비가 疏遠하고, 병력은 消耗하고, 糧食은 다되고, 백성은 怨神의 노여움까지도 속이고 있다. 혹은 太白(金星)이 晝間에 보이는 것은 兵亂의 象으로서 듣기에 옛날의 聖帝 明王도 禍難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다만 아직 그것이 오지 않는 前導에는 우리 쪽으로부터 그것을 오지 않도록 하고, 禍難이 이미 오면 이에 응하여야 할 준비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人事를 닦아서 天變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島夷의 來朝 희망을 끊은 것은 우리 쪽으로부터 禍難이 오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兵亂을 초래하는 발단을 열어 놓고, 이에 응하려고 하는 것은 들어 본 일이 없고, 우리 쪽으로부터 禍難을 초래하여 놓고 이에 응하려고 하는 것은 災禍를 삼가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퇴계의 所論이다. 그 主旨는 결과적으로 禍難이 오는 것은 몇 사람이라도 멈추게

할 수 없지만, 스스로 災禍를 초래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이미 북방 여진족이 邊境을 노리고 더욱이 南方倭人이 來寇를 부르는 일이 되면 남북 二虜를 일시에 함께 적으로 하는데 이르고, 동쪽을 지키면 서쪽이 掀舞하고, 腹部를 守衛하면 등의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상황이었다.

그것을 퇴계는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는 바야흐로 어떻게 믿는 바가 있어서 이것을 능히 변명할 것인가. 이는 臣이 크게 우려하는 바가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더욱이 퇴계는 以下에 있어서 赤心を 吐露하여 국가내외의 정세로부터 왜인의 請和를 허락할 것을 上言하고 있다. 長文을 꺼림없이 먼저 이를 풀어 쓰는 문학으로 고쳐서 약간의 검토를 다음에 첨가하고자 한다.

東南은 財賦가 나는 곳, 병력이 駐在한 곳으로서 더욱 보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각컨대 좋은 시기가 되어 그 和를 들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사퇴하여 말하기를 “나라에 大赦가 있고, 그대에 있어서 또한 鴻恩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특히 그대의 請을 허락한다. 云云”라고 前日의 約盟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南方의 우려를 부드럽게 하여 더욱더욱 人事로써 근본의 땅으로 안정시켜 그 여력이 미쳐서 虧闕한 바가 없다면, 西北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뜻을 一面의 備禦에 전념하여 倉卒敗事의 患難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어찌 四散四戰에 현명하지 않고 奔命을 給足시킬 수 없는 者에게 피로하게 할 것이냐. 만약 이와 같이 하여 夷情反側하면 오히려 悍然하게 執兵하여 邊鄙를 정복하면, 즉 是非는 우리로부터 이르는 곳에 있고, 소위 聖王이 면할 수 없는 바로서 또한 당연히 우리가 이에 응하는 所以를 진력하여야 할 것의 如何 뿐이다.

우리에게 저들이 금수와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대저 국가가 왜인에게 있어서의 그 和를 허락하는 것은 좋다. 그리하여 방비를 가지고 조금도 느슨하게 해서는 안된다. 禮로써 이에 접하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推借는 가지고서 심하게 지나쳐서는 안된다. 糧弊를 가지고 그 情을 있고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無厭을 구하고 贈賂가

심하도록 넘치게 연유하여서는 안된다. 俗談에 말하기를 교만한 아들이 모친을 모욕한다. 그것은 家人의 아들을 미리 防檢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하게 된다. 교만하여 중지하지 않고 혹은 罵辱하게 된다. 이 아들이 아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들로서 여기에 이르는 것은 역시 부모의 과실이 된다고. 況且 한번 거역하여 이를 물리쳐도 終身 그것이 좋다고 할 것이나. 때문에 말하기를 預檢하는 것과 같은 것은 없다고. 이것은 또한 晷日에 마땅히 강구하여야 할 바이다.

臣이 또한 듣기로 人臣은 私가 없고 交事는 반드시 名義가 있다고. 金安國¹⁵⁾은 왜인을 접대하는 일이 후하게 지나치고, 이들은 더욱더욱 貪縱을 멋대로 한다. 安國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찌 왜인에게 있느냐. 더구나 그가 또한 망령되게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忠이라고 이른다. 그리하여 胡椒의 饋이다. 조정이 허가하여 그 집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여 倭로 하여금 모르게 하여 이를 한다. 마땅히 曉諭하여 이를 퇴각시켜야 하고, 그 거짓을 사이에 두고 이를 하게 하면 그 術中에 빠져 조정의 수치가 또한 심하게 될 것이 아니냐. 本朝의 臣으로서 忠을 일본에 힘쓰는 이것은 어떠한 명분이며 어떠한 의리냐. 臣은 아마 安國의 눈이 바야흐로 지하에서 감고 잠들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前日 臺臣의 論이 매우 사리에 맞고 원하므로 이에 대한 裁判이 있기를.

이상 長文을 싫증없이 또한 감히 요약도 하지 않고 이것을 밝힌 것은, 이퇴계가 이 문제에 관한 기본방침 내지는 사고방식을 그의 口吻으로써 나타내려고 하였을 뿐이다.

15) 增補退溪全書(同書四, 退溪文集放證 권3, p.497)

金安國에 대하여 以下の 註가 되다. 安國은 字가 國鄉, 號는 慕齋, 義城人, 官은 判書, 諡는 文敬, 文章學術은 儒者의 宗이 되다. (퇴계)선생은 일찌기 “慕齋를 읽고 비로소 正人·君子의 論을 들었다”라고 한다. 생각컨대 攷事撮要에 “庚午倭變(1510년)의 다음, 倭使 冊中에 와서 和를 請한. 朝廷은 이미 허락하지 않다. 和, 그 원한이 있을가를 염려하여 그 商物을 交易할 것을 허가하다. 드디어 무궁한 弊가 되다. 慕齋 그때에 接待使가 되다”라고. 퇴계의 上疏文중에 외교는 公事이고 私事가 아니다. 분수를 넘어서 倭人을 厚遇하여 贈賄를 받고, 사적으로 무역한 자는 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논술하여 金安國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上記의 事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요약하면, 퇴계는 ① 東南은 국가의 財賦·병력이 있는 곳으로서 무엇보다도 이를 확보하여야 할 땅이라고 하는 점 ② 왜인의 請和는 나라의 大赦에 비슷하게 하여 特許하여야 할 점 ③ 東南국경을 안전하게 하여 두면 北夷의 防禦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 ④ 만약 왜인이 反側하면 悍然하게 무력으로써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점 ⑤ 왜인의 請和를 허락하여도 방비는 느슨하게 해서 안된다는 점 ⑥ 예절로써 왜인에게 접대하는 것은 좋지만 推借(사물을 강압적으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을 많이 만드는 뜻)를 심하게 지나치지 않게 하라는 점 ⑦ 糧弊로 왜인의 情을 이어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좋지만 싫증없이 요구를 용인하거나 贈賂를 심하게 받지 말라는 점 ⑧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자식의 驕逸로 부모가 罵懲을 받아도 필경은 부모에게도 미리 防檢하지 않은 과실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그런 까닭에 항상 預檢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 ⑨ 외교는 私事가 아니고 金安國과 같이 왜인을 지나치게 厚遇하는 것은 本朝의 臣으로서 忠을 일본에 권하는 것으로서 죄에 상당한다고 하는 것 등등을 上言한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퇴계는 이상의 上疏를 맺어 이하와 같이 말한다. 즉,

臣素有虛羸沈痼之疾 此來尤劇 氣息綿延 與死爲隣 而聞朝廷絕倭之請 心竊怪嘆 以此事闕百年社稷之憂 係億萬生靈之命 不可不一言而死 抱私恨於無窮 故力疾忍辛 謹獻此狂瞽之說 伏願殿下以臣此章 稟乎慈殿 而更搏謀於在延之臣 虛心而察 邇折衷而審處之 非愚臣之幸 乃宗社之幸也 臣無任僭越 戰兢激切 屏營之至 謹昧死而聞

라고 있어, 臣(퇴계)은 이즈음 사경을 헤매는 重疾에 괴로와 하고 있었지만 조정이 왜인의 請和를 거절한다고 듣고, 마음 속으로 남몰래 怪嘆하고 있는 바다. 당초 이번 일은 國家社稷 백년의 우려에 관계되고 萬民生靈의 存否에 걸린다. 한마디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으면 私恨이 무궁하게 남게 되기 때문에 감히 질병을 무릅쓰고 이 上言을 한 것이며, 殿下에 있어서는 다시 넓게 在延의 臣과 모의하여 “虛心으로써 가

까운 곳을 살피고 절충하여 소상하게 이를 대처하면 愚臣의 多行 뿐만 아니라, 즉 宗社의 多幸이 되겠습니다”라고 논술하고 있다.

VI. 結 論

이상 논술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퇴계가 中央政府部내에 있어서 직접 정치의 일을 携扶한 것은 모친의 服喪과 지방관의 시기를 제외하면, 34세의 3월에 科擧의 文科를 합격하여 고등문관으로서 出任하여서부터 겨우 10여년의 年月이었다. 그러나 그가 承文院, 弘文館, 成均館의 각종직에 있었던 것이 가장 길고, 그 외에 經筵官, 世子侍講院文學, 司憲府, 司諫院, 義政府 등등의 役職에 취임하여 항상 왕을 직접 보좌한 입장으로 있었다. 新進氣銳의 役人으로서 그 지위는 正3品 이상에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재능은 그의 본심과는 다르게 상당히 발휘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직접 그가 筆錄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지만, 「年譜」에 삽입되어 있는 바, 그의 그때 그대에 왕에게 대한 上言은 爲政의 闕失을 찌르고, 人心의 和를 말하며, 왕의 反省·修德을 요구하고, 武史에서 귀감이 되는 것을 당연히 보아야 할 것을 권하고, 不變地異나 旱災 등에 대응하는 救民政策의 확립, 汚職官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直言·諫言을 기피하지 않고, 또한 지방문화의 진흥책에도 힘을 쓴 것이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土禍가 많이 일어나고, 이퇴계 자신 및 그 一族에게도 그 累가 미쳤는 데도 불구하고, 敢然하게 正言을 피력하여 자신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전통유학의 正道를 파악하고, 그 학문적 신념에 바탕을 둔 것이 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일은 특히 그가 45세의 해 7월에 왜인이 수호를 요구하여 왔을 때 朝野가 이것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하는 여론 속에서 그 한 사람이

수호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하는 上言을, 그의 기본적인 외교철학, 夷狄이라고 일컬어졌던 이민족에 대한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그 위에 周到한 외교상의 이해득실·주체성의 확보·李朝 국가체제의 현상 등등을 계속 배려하여 전개한 것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으며, 그가 결코 靑白한 인텔리가 아니고, 또한 종래 자칫하면 간주되어 온 것처럼 晝齊派의 학문인이 아니고, 確乎한 정치철학을 가진 당당한 정치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외수호의 문제는 國家社稷 백년의 安危, 億萬生靈의 생명에 걸리는 중대사로서, 이것을 거절한 데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이퇴계의 통찰력은 이미 논술한 것과 같이 40수년 후에 현실로 되어 李朝國家에 엄습한 國難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장기간에 걸쳐서 승문원이라고 하는 事大·外交에 관계되는 정부 部內의 職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立言과 豫言을 할 수 있는 외교감각을 자기 속에 길러 온 것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유학이 지니는 修己治人·內聖外王 양면의 道를 모순없이 통일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이퇴계란 개인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최후로 제4장에서 고찰한 것처럼 이퇴계의 이민족에 대한 기본자세는 ‘夷狄도 사람이다’라고 道破하고, ‘문화적 教化’의 대상으로 하여 헛되이 ‘不共戴天의 敵’이라고 꾸짖지 않았던 점에 있어서 朱子의 對異民觀과 다른 바가 현저하였다. 원래 徽宗·欽宗의 二帝가 金軍에게 납치되어 살해되고, 국토의 半이 점령되었다고 하는 國難下의 상황과 對倭修好를 거절할까 아니할까의 시점에서는 외교상의 內政上도 크게 다른 점이 있었다. 또한 이퇴계 자신도 宋人은 金과 和議하는 것에 의하여 스스로를 어리석게 하였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퇴계 정도로 朱子學을 진심으로 수용하여 그 근본을 이해·파악한 학자는 朱子 이후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對倭修好 문제는 퇴계 獨自의 정치·외교철학에 입각한 立論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林東綴 譯)